

광주지방법원 2020. 12. 8 선고 2020가단5889 판결 [건물등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피고 2, 3, 5의 소송대리인 B

6. G

변론 종결 2020. 11. 24

판결 선고 2020. 12. 8

주 문

1. 원고에게 피고 B, 피고 E, 피고 F, 피고 G 은 각 1/ 5지분에 관하여, 피고 C, 피고 D는 각 1/ 10지
분 에 관 하 여 각 별 지 기 재 건 물 을 철 거 하 고 , 각 별 지 기 재 토 지 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1>

이 유

1. 인정사실

원고는 1997 . 3. 14. 별지 기재 토지(이하 ' 이 사건 토지' 라 한다) 를 낙찰받아 1997 .6. 3.

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니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기재 건물(이하 * 이 사건 건물' 이라 한다) 에 관하여1990. 7. 27.

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.

비은 2005 . 9. 3. 사망하였고, 상속인으로는 그 자녀인 피고 B, 피고 E, 피고 F, 피고 G, 1(각 상속분 1/ 5) 이 있다.

I은 2017 . 9. 16. 사망하였고, 상속인으로는 그 자녀인 피 고 C, 피고 D(각 상속분 1/2, 망 H 기준 1/10)가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내지 2호증의 각 기재,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, 피 고 들 은 이 사 건 토 지 의 지 상 에 설 치 된 이 사 건 건 물 을 주문 제1항 기재 비율로 공유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,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 게 , 그 지 분 의 한 도 내 에 서 이 사 건 건 물 을 철 거 하 고 그 대 지 인 이 사 건 토 지 를 인도할 의 무 가 있 다 . 따 라 서 원 고 의 이 사 건 청 구 는 이 유 있 어 인 용 하 기 로 하 여 주문 과 같 이 판결 한다.

1)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의 지분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의 인도를

구하고 있으나,다른 한편 당 사자표시 정정을 신청하며 피고들의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상속관계를 주장하고 있어 주문과 같이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선택한다.

판사 박남준

별지